

연방사법센터



(The Federal Judicial Center)

미국 연방법원의 교육 및 연구

연방사법센터는 미국연방법원에 대한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연방사법부 내의 독립된 행정조직이고 의회로부터 직접 예산 배정을 받는다.

1. 역사

미국 의회는 1967년 연방사법센터(the Federal Judicial Center, 이하 약칭하여 FJC라고 함)를 설립하였다. 이 시점은 미국 사법부 역사에 있어서 사법행정과 사건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연구 및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던 시점이었다. 그 당시 연방대법원장이던 Earl Warren을 포함한 미국 연방사법부의 대표자들은 연방법원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연구, 기획, 교육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로 하여금 사법부 내에서 이러한 임무와 책임을 가진 조직을 설립하도록 제안하였다. 미국연방법원행정처(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이하 약칭하여 AO라고 함)는 1939년 사법부 예산의 집행, 통계의 수집, 정책 개선, 입법부 관계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연방의회는 연방 사법부의 교육 기능을 AO에 맡기지 않고 사법부내에 FJC라는 별개의 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연방 사법부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이 정책결정 기능과 분리되었으며, 그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이 연방사법부의 일상적인 법원 업무를 위한 예산과 분리되었다.

2. 임무

FJC의 임무는 연방법원의 법관 및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FJC는 연방 법무부와 협력하여 무자력 형사피고인을 변호하는 연방 공익변호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연방 법무부는 연방 검사들을 훈련시킨다). FJC의 연구 부서(research division)는 사건관리,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연방소송절차 법의 개선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법행정에 대한 실증적이고 탐구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FJC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1992년 의회는 FJC에 외국법관에 대한 지원 부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국제사법교류국(International Judicial Relations Office)은 연방정부 부서와 국제사법 발전 분야에서 일하는 조직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사법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의 사법절차나 운영방식에 관하여 연방법원에 대하여 정보를 보급한다.

한편 FJC는 주 법원의 판사 또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3. 구조

FJC는 FJC운영위원회(The Board)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FJC 운영위원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이 되고 미국 연방사법회의(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7인의 연방판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AO 소장은 FJC 운영위원회의 겸직 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권고 기능을 발휘하지만 FJC의 일상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는 FJC 소장과 부소장을 지명한다. 소장은 전통적으로 연방판사가 지명되었는데, 소장은 그 재직기간 동안 연방판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소장 및 부소장은 4년 정도 근무한다.

FJC는 1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변호사, 교육 전문가, 법학 및 사회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연구원, 언론, 출판 및 정보기술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수국 (Education division)은 판사와 법원직원(court staff)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하여 운영된다.

4. 예산

FJC는 연수비용(참가자에 대한 여비, 숙박비, 식사비를 포함함), 원격교육 기술비, 직원 급여, 기타 운영비를 포함하여 2010년 연간 예산으로 약 2천 700만 달러를 사용하였다. 예산은 의회가 FJC에 직접 배정한다. 의회는 FJC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적 지원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리된 FJC 기금을 설립하였다. 그 기금에서 제공하는 자금은 중요하지만 FJC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5. 법관 연수

(1) 의의

연방판사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기본권, 지적재산권부터 시작해서 마약 범죄, 기업 범죄 등 다양한 소송사건을 처리한다. FJC는 법관 연수 프로그램, 교재 등을 개발하여 판사들이 과중한 사건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함과 동시에, 판사들이 법, 과학, 기술 등의 발전에 뒤쳐지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수 부서는 법관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 새로 임명된 연방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세미나도 개최한다. 프로그램과 관련 교재는 실용적인 기술을 강조한다. FJC는 일반적인 로스쿨 타입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재판상황에 맞는 강사와 주제를 개발한다.

법관연수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연방판사, 법원행정직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고, 때로는 일선 개업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소양을 갖춘 연방판사가 발표를 하고, 때로는 FJC의 전문 직원이 강의를 하기도 한다. FJC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해당 강의에서 논의되는 주제에 관련되는 모든 관점을 설명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교수진은 비용만 지급받는 정도의 보수로서 강의를 하고, 연방판사가 아닌 강사에 대하여는 소규모의 보수가 지급되기도 한다.

연방판사는 법관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할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FJC가 제공하는 법관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참가비용(여비, 숙박비, 식대)은 FJC가 지불 책임을 부담한다.

(2)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연방판사는 판사로 지명되기 위하여 특별한 시험이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명 후의 오리엔테이션은 비교적 간단하다. FJC는 새로 지명된 신임판사들에게 연수를 위한 출판물 및 비디오테이프를 보내고 일주일간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판사로서 임명되기 전에 이들 판사들은 변호사(개업변호사 또는 정부 기관 소속 법률가)로서, 어떤 경우는 주 판사 또는 하위 연방판사로서 주요 전문적 경험을 쌓아왔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법률 문제에 관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재학습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다. 커리큘럼은 재판에 관한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즉 민사 및 형사 재판 절차, 사건 관리, 법조 윤리, 판결 작성에 관하여 진행되는데 특히 1심 판사 및 치안판사 (magistrate judges)에 대하여는 형사재판 선고절차에 관하여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오리엔테이션 과정동안 제공되는 실체법은 연방 소송에서 자주 제기되는 고용차별, 인신영장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헌법에 관련된 복잡한 영역에 제한된다. 신임판사들은 그들이 익숙하지 아니한 다른 법적 주제에 관하여는 독자적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 단계는 연방판사 임명 후 수 개월 내에 실시되는데 보통 8인에서 12인의 신규 임용 판사가 포함된다. 신규임용 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멘토링 형태로 진행된다. 즉 두 사람의 경력 법관이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는 한 주 동안 토론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에서 신임판사들은 FJC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용 비디오테잎을 시청하는데, 그 비디오테잎에는 민사사건 관리, 배심재판 관리, 법조윤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은 신임판사에게 각 교육 주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경력 법관에 의하여 지도되는 그룹토의를 위한 시발점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토론 시간은 참가 법관들로 하여금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연방교도소 방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 임명된 판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고하는 피고인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리엔테이션의 두 번째 단계는 워싱턴 디시에 있는 Thurgood Marshall Federal Judiciary Building에 있는 FJC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데, 이 때 처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두 세 그룹을 함께 모아서 교육한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민사소송, 고용 차별, 사건 관리, 언론 관계, 법조 윤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진행된다.

(3) 경력법관 연수

FJC는 또한 경력법관 연수 프로그램에서 조정기법 중심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고용관련법, 환경법, 법과 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된 워크숍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FJC는 미국 전역에 근무하는 연방지방법원 판사, 연방항소법원 판사, 파산법원 판사, 치안판사들을 위하여 이를 혹은 3일간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로스쿨과 같은 다른 기관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에 더하여 일년에 한 번씩 전국 또는 지역별 워크숍이 개최되는데, 이 때에는 넓은 범위의 법적 주제 및 재판기술(judicial skills)을 포섭하는데, 여기에는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분석, 법률 분야의 새로운 발전, 법사학적 최근 동향, 법과 문학, 재판의 심리학이 자주 포함된다.

FJC는 또한 법원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는데, 이들 법원장은 항소심 관할 지역, 지방법원 관할의 사법행정의 책임도 맡고 있다. 이들 법원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제로는 리더쉽, 경영기법, 법원장 및 행정관리자의 팀워크를 위한 특별 워크숍에 관한 것들이 있다.

(4)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위한 프로그램

2단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만큼 새로 지명된 연방항소심 판사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FJC는 뉴욕대학 로스쿨의 법원행정을 위한 교육기구와 합동하여 제공하는 연방 및 주 항소심 판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새로 지명된 연방항소심 판사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로서의 경험이 없는 연방항소심 판사들은 FJC가 제공하는 지방법원 판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FJC는 또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동향, 사건적체 관리, 모의사건 판결, 판결문작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법률 주제를 포함하는 항소심 판사를 위한 지속적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 원격 연수

직접 참가하는 연수 워크샵이나 회의에 추가하여 FJC는 원격 연수 즉, 출판물,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비디오, 인터넷 교재를 사용하여 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출판물 이외에도 FJC는 판사들이 동료를 만나 직접 기술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드물게 원격 연수를 실시한다.

FJC는 실전가이드, 실체법에 대한 연구, 판결문 작성에 관한 소책자, 참고문헌 사용법을 포함한 다양한 출판물을 개발한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 자문단이 기획 및 초안 단계에서 조언을 제공한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위한 Benchbook”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 배심원 선정, 모의사건 연습과 같은 소송이전 절차 및 재판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ADR에서의 사건 관리 안내”는 대안적 분쟁해결, 색다른 ADR 방법, 법원에 제기된 ADR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관련되는 사례를 논의한다. “과학적 증거에 관한 참고문헌 안내”에서는 전문가가 연방법정에서 통계, 의학적 사례, DNA 증거에 관하여 증언할 때의 과학적, 기술적 논점을 판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FJC는 또한 Federal Judicial Television Network(FJTN)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법관연수 비디오를 개발한다. FJC는 1980년대에 연방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보충하고 법률과 재판 영역에서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비디오 개발을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연방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FJTN을 개국하였다. FJTN은 미 전역에 소재한 연방법원에 위성으로 정보 및 연수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FJC는 미국 전역에 소재하는 법원과 법원직원들이 방송스튜디오에 있는 교수진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생방송뿐만 아니라 사전녹화된 제작물도 방송한다. FJC의 연수전문 변호사들은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하여 FJTN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해

연도 중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9/11 이후 통과된 새로운 테러 관련법에 대한 해설, 재판에서의 과학에 대한 연속물이 포함되어 있다. FJC는 자체 웹사이트에 FJTN 게시판을 게시하여 방송스케줄과 프로그램 요약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FJC는 또한 연방법원 인터라넷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연방판사 및 연방법원 직원에 대해서만 제한하여 제공되는 웹 기반의 자료들이다. FJC의 인터라넷 사이트는 FJC 출판물, 최근 세미나, FJTN 방송, 연수 저작물, 주요 소송과 전자적 증거개시와 같은 주제들에 관한 안내서와 샘플 자료에 관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한다.

(6) FJC 연수프로그램의 평가

각각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FJC는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저작물, 강사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평가서 양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프로그램의 짜임새와 내용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요청받는다.

FJC는 참가 법관들에 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판사들의 연수 수행과정을 모니터하지 아니한다.

(7) 외국 법관의 참가

FJC는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공간이 허용할 경우 외국 법관들에 대하여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 법관들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여행, 숙박, 식사 등의 비용은 본인들이 준비하여야 한다. FJC 프로그램은 특정한 법 분야에 관한 기본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미국 연방판사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슈나 최근 경향에 관한 내용이 주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연방법관 프로그램은 법관

연수의 교육방법론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외국 법관들에게 활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6. 연방법원 직원에 대한 교육

FJC는 법원 행정관리자, 보호관찰관, 공판전절차 관찰관(pretrial services offer)을 포함한 법원 직원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직원교육 프로그램은 신규 법원 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사건 진행 관리와 같은 관리 (management) 및 운영기술(specific operational skills)을 교육한다. 연방판사들에 대한 교육과 달리 법원직원에 대한 대부분의 FJC 프로그램은 원격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FJC 교육 전문가는 많은 경우 교육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문단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수요 평가, 주요 전문가 협업, 신규 프로그램 실험을 포함한 커리큘럼 개발 모델을 사용하여 개발된다. FJC는 연방법원행정처와 합동하여 법원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많은 연방법원들은 광범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는데, 법원 내 교육 전문가 (in-court training specialist, 다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추가로 교육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법원 직원을 말함)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다. FJC가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 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돋고 있는데, 교육훈련가에 대한 연수, 커리큘럼 개발, 시청각 교재뿐만 아니라 강사와 피교육생에 대한 안내서 제공을 포함한다.

FJC는 법원직원들에 대하여 다양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FJTN 프로그램과 온라인 회의 및 개별지도서를 포함한다. FJTN은 업무상 책임에 부합하는 전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 운영에 관한 새로운 발전을 알려주는 매우 가치있는 도구임에 틀림 없다. 예컨대, FJTN 시리즈 중 “공적 정보 및 확대”는 AO와 함께 제작한 것인데, 법원 업

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법원직원의 역할을 잘 묘사하고 있다. “법원 대 법원(Court to Court)” 시리즈에서는 전국에 걸쳐 소재하는 연방법원을 소개하고 광범위한 법원 운영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법정에서의 기술적 발전상을 설명하고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 직원감독을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FJC의 웹 기반 자료는 온라인 개별지도서, 회의, 정보교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중 정보교환의 장으로 인하여 전국 법원 직원들은 상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데, 법원 지도서 등의 문서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접근하면서 주어진 토픽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수 있다. FJC는 또한 연방파산법에 대한 온라인 개별지도서와 연방법원의 새로운 전자적 소송 제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FJC는 직원 교육, FJTN 방송프로그램 개발, 책자 편찬에 있어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온라인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하여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강사들과 훨씬 더 깊이 있는 주제를 탐색하도록 한다.

7. 연구

FJC는 다양한 종류의 재판, 법원 관리, 형사판결 선고에 관하여 경험적이고 탐구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연수 부서(research division)는 법학과 사회과학 분야를 모두 전공한 이중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미국 연방사법회의 산하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FJC 연구업무는 연방사법회의가 연방법관의 정원을 책정하고 사건관리에 관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탐색하고 재판절차에 관한 규칙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FJC의 연구활동은 특정한 행위유형이나 개선방식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방식이 아니다. FJC 연구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보면,

증거의 제시를 위하여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제시 및 그것이 사실인정과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법정 소송진행 중 속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디지털 녹음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 ADR 실무의 점검, class action 소송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의 연구 등이다.

8. 연방법원의 역사에 관한 연구

FJC 역할 중 하나는 사법부 역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부분 책임은 연방 사법부 역사 사무국(Federal Judicial History Office)이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는 모든 종 신 연방법관들의 약력 현황, 모든 연방법원의 입법 역사, 다양한 역사적 문헌자료와 서류, 사법부 역사에 관한 참고 안내서를 포함하여 연방사법부 역사에 관한 온라인 자료를 관리 한다. 또한 연방사법부의 역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개별 연방법원에 대한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9. 국제 프로그램

FJC의 국제사법교류 사무국(International Judicial Relations Office)은 외국방문단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사법시스템과 FJC의 기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FJC는 외국 법관이나 개발부서를 초청하여 사법부 연수, 법원 운영, 사건관리, ADR, 법조윤리와 같은 주제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FJC 직원은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외국 법원과 외국사법연수원을 방문한다. 외국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연구원 프로그램(The Visiting Foreign Judicial Fellows Program)은 외국의 법관, 법원공무원, 학자들에게 FJC 직원의 도움을 받아 FJC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주제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사법연수 프로그램의 여비 등 직접 경비는 외부기관의 자금으로 집행된다.